

자동차금융(오토할부·오토론) 신용정보조회 요청서

1. 고객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 SKT	☐ KT	☐ LG U+		

※ 본인은 자동차금융 대출신청을 위하여 귀사 상담원이 상기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분증 확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직원 기재)

판매자	판매점명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판매점 주소			(발급일자:)	
				(발급기관:)	
	판매자	(서명/인)		☐ 운전면허증	
				(면허증 번호:)	
				본인확인자	(서명/인)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필수 기재사항

1. 고객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성명	영문명	*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국적	생년월일
자택주소 (실거주지)				자택전화
자택주소 (주민등록지)	휴대폰	☐ SKT ☐ KT ☐ LG U+		
청구서	☐ 이메일 ☐ 휴대폰 메시지 ☐ 미수령	E-mail		
결제계좌	☐ 하나은행 ☐ 기타() 계좌번호() * 본인계좌에 한함			
결제일	☐ 1일 ☐ 7일 ☐ 13일 ☐ 17일 ☐ 21일 ☐ 23일 ☐ 기타() ☒ 즉시출금			

※ 본인은 자동차이체 약관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자동차이체를 신청하며, 귀사와 본인이 개설한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차이체 및 즉시출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시출금이란 연체금 및 중도상환 등 고객과 대금정산 필요 시 고객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계좌만 해당됩니다.)

2. 대출의 용도 및 거래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대출용도	☐ 개인용 ☐ 개인사업자용
실제 금융거래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 예 ☐ 아니요

※ 금융거래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가 정보 제공 거절 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정보를 기재해주세요.(개인사업자용 선택시 필수 기재)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년월일	
사업자 전화번호		업태/종목	
사업장주소	사업장형태	☐ 소유 ☐ 임대	

※대출용도가 사업자용인 경우 사업자 정보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은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기업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으로 미동의시 개인용 대출로 진행됨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확인사항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의이익상실 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설명 원함 (☐ 65세 이상 고령층 ☐ 은퇴자 ☐ 주부 ☐ 기타)

☐ 추가 설명 원하지 않음

4.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위
근속기간 (사업기간)	연소득	만원

※ 급여소득(직장)을 기준으로 대출받으시는 경우 작성

선택 기재사항

금융상품 이용 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 시 작성 바랍니다.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활용되어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 정규 ☐ 계약 ☐ 파견 ☐ 기타()
주요 소득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기타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필수 기재사항

1. 고객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인정보	법인명(한글)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주소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일 경우)		
	직장전화	FAX	E-mail
청구 및 결제정보	청구서	* 청구서를 휴대폰메시지로 수령하는 경우 법인업무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 이메일 ☐ 휴대폰 메시지 ☐ 미수령	
	결제계좌	☐ 하나은행 ☐ 기타() 계좌번호()	
	결제일	☐ 1일 ☐ 7일 ☐ 13일 ☐ 17일 ☐ 21일 ☐ 23일 ☐ 기타() ☒ 즉시출금	
대표자	성명(외국인일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 SKT ☐ KT ☐ LG U+	국적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하며, 귀사와 본인이 개설한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및 즉시출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시출금이란 연체금 및 중도상환 등 고객과 대금정산 필요 시 고객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계좌만 해당됩니다.)

2. 법인업무 담당자를 기재해 주세요.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FAX
----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선택 기재 사항」 * 대리인 신청시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택 기재사항

대리인 신청시,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자택주소		휴대폰	☐ SKT ☐ KT ☐ LG U+
E-mail	직장전화	FAX	국적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	--------	-------	--------



자동차금융(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14년 11호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 고객님의 차량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제조사	차량/모델	차량가격	금	원(W	)
차량번호	연식	차대번호		인도일자	

2. 고객님의 상품조건을 선택해주세요.

유형	☐ 오토 할부 ☐ 오토론 ※ '오토 할부' 상품은 특별한도 부여된 본인명의로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 일시불 결제 후 자동으로 할부금융으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한도	총 대출금액	금	원(W)		
선입금	☐ 있음 ☐ 없음		선입금	원	선입금율()%
상환 방법	정상대출원금	금	원(W)	금리 %	기간 개월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만기일시 ☐ 기타
	거치대출원금	금	원(W)	금리 %	기간 개월 ☐ ()개월 거치후()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타대출원금	금	원(W)	금리 %	기간 개월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만기일시 ☐ 기타
중도 상환 수수료	만기 1년 이상	중도상환원금 × 1%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만기 1년 미만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지연배상금율	()%. 지연배상금율 기준 : 약정금리 + 최고 3%(법정최고금리 이내)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율로 함 1.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2.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실질 이자율	연	%	월납입금	원	총납입금 원
인지세	인지세	원	고객부담인지세	원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
근저당 설정	☐ 예 ☐ 아니오		근저당설정금액 원		
	담보조건	☐ 자동차근저당 ☐ 연대보증인()명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 중 대표자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 및 대표자는 상기 근저당설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법인고객 중 담당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기 근저당설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적법하게 수권을 받아 그 동의하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차량공동명의의 경우 근저당설정 제후업체에서 공동명의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대출신청인(본인)에게 연락할 경우 공동명의인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3. 연대보증인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입보 유형	※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일 때(1인)	☐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 이상) ☐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 무한책임사원
	자동차구입일 때	☐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 영업목적 차량구입
	기 타	☐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 특정근보 ☐ 한정근보증
	※ 보증 종류	
[특정근보증 : 당해채무(기한연장·증액 포함), 한정근보증 : 특정 및 동일종류 신규대출]		



보증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적	휴대폰	
	자택주소				자택전화	
	직장명	부서	직급	근속년수	년	
	직장주소				직장전화	
	관계	신청인의()	재산세	만원/년	연소득	만원
보증 사항	보증채무최고액	원			보증기간	개월

※ 총대출금액의 130%입니다.(단, 영업을 위한 목적이나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시 100%)

· 대출신청인(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상기 대출신청 내용(대출조건/보증조건 및 세부규정)과 약정서 약관 내용(자동차체 약관 포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제출하신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본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하나금융그룹내 지주사 및 자회사간에는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것과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 취급방침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께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신원정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시에는 본인(명의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하고,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적용여부 설명

당사의 오토할부상품은 아래 항목에 대해서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할부금융거래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보험,증권 및 어음,부동산 등)

□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선박 등)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등)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	--------	-------	--------

할부금융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판매자	판매점명	판매자	(인)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판매점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판매제휴점	본인은 상기 계약조건과 같이 매매계약 및 인도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을 대면하여 자필서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면허증 번호:)	
					본인확인자	(서명/인)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님의게 제공됩니다.



대출금 지급 및 수령 위임신청서

1. 대출금 지급 및 수령 위임에 관한 동의

본인은 차량 구매를 위해 귀사에 신청한 대출금을 매도인(판매회사) 또는 그 대리점 및 제휴사에게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대출금을 송금하여 입금된 시점에 대출 신청인 겸 계약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을 확약합니다.
만일 대출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귀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환불 받아 원상회복 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요청에 따라 귀사에게 대출금이 반환되는 시점에 해당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 겸 계약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간주됨을 확약합니다.

[수임인]

성명(상호)			
은행명			계좌번호
위임 지급액			

2. 유예/거치대출 상품 만기 연장에 관한 동의(원금만기일시 상환 선택 시 작성해 주세요.)

본인은 약정 대출기간 만기 시, 기한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연장 가능여부, 연장금리, 연장기한, 보증인 입보조건 등의 연장 조건은 본인의 대출금 상환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연장시점의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서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구분	선택	내용		
1.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		① 25% 이상 지분 소유자 중 최대 주주(지분율: %)		
		② 위 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최대주주(지분율: %)		
		2) 대표자 또는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3) 위 1),2)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②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대상		④ 확인 생략 대상		
		1)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2)금융기관		
		3)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3.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성명(영문)	여권의 영문명 기재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의 경우 필수 기재
4. 작성인 정보 (고객사 작성)	법인명			
	직책			
	성명	(서명/인)		

개인(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서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계약자와 실제 소유자(금융거래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가 다른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계약자 본인이 실제 소유자입니까?	☐ 예 ☐ 아니오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의 경우 필수 기재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전체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 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아래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카드, 대출, 가맹점 등)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아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아이핀번호, 결제대금 출금자동이체 정보(예금주성명,생년월일,결제은행,계좌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2.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이크레딧블(주)
조회 목적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에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아래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아이핀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3. 제공에 관한 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의 업무 수행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아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전체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공공정보 등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 협회: 여신금융협회 - 국가기관: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기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령상 의무 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I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아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3) 인천시 계양구청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인천시 계양구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차 근저당 설정 및 해지, (온라인)차량정보 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I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4) 제휴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케이씨씨오토(주), 케이씨씨오토모빌(주), 케이씨씨모터스(주), 아우토슈타트(주), 이비온(주), 지엠아시아퍼시픽 지역본부(주)(캐딜락), 유카로 오토모빌(주), 선인자동차, 주식회사 네이처모빌리티, 타타대우상용차(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휴수수료 정산
보유 및 이용기간	수수료 정산 후 1개월 이내

I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성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여신성거래정보(대출금액, 대출조건)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800-1111)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인)
--	-------------------------	---------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전체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등급 안내: 1800-1111)

수집·이용 목적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당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하나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 권유
보유 및 이용기간	아래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카드, 대출, 가맹점 등)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 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카드·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무이자할부 등)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아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보 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일반식별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가족정보, 기타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2) 카드·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당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및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아래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카드, 대출, 가맹점 등)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 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의 부수업무 (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와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아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보 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일반식별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가족정보, 기타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체 ☐ 문자 ☐ 이메일 ☐ 전화 ☐ 우편 ☐	

※ 카드·금융 상품과 부수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권유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든지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800-1111/ 홈페이지: www.hanacard.co.kr)

※ 상기 이용권유 동의는 하나머니 신규가입에 한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전화: 1800-0000/ 홈페이지: www.hanamembership.com)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전체 동의서

2. 제공에 관한 사항

(1) 하나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제공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제공받는 자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하나캐피탈(주), 하나생명보험(주), 하나손해보험(주), (주)하나저축은행, (주)핀크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 권유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 동의일로부터 2년 또는 동의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이후에는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권유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I 제공항목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신중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직장명, 직급,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CI(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Key 값)			
↳ 신용거래정보	대출상품명, 대출잔액, 이자율, 대출시작일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정보, 대지급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			

▶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대상 회사	전체동의 ☐ (주)하나은행 ☐ 하나증권(주) ☐ 하나캐피탈(주) ☐ 하나생명보험(주) ☐ (주)하나저축은행 ☐ (주)핀크 ☐	
매체	전체동의 ☐ 문자메시지(SMS, LMS, 모바일메시지 등) ☐ 전자우편(이메일) ☐ 전화 ☐ 우편, 택배 등 ☐	

※ 선택한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해서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의 동의한 회사에서 고객님의께서 선택한 안내수단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다이렉트 자동차/운전자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위한 제공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제공받는 자	(주)에드 인슈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이렉트 자동차/운전자 보험료 비교 견적 및 간편 가입을 위한 지원 서비스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 제공일로부터 3개월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주)에드 인슈를 통한 다이렉트 자동차/운전자 보험료 조회 안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I 제공항목

개인(신용)정보	아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안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 신용거래정보	차량정보(메이커, 차종, 가격), 이용상품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800-1111)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인)
--	-------------------------	---------------------



[하나카드 자동차금융] 근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근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자동차	☐ 건설기계	등록번호	을부번호
근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하나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호성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피담보채권가액 (저당권설정가액)		변제기한	별도약정
이자액	별도약정	이자지급일	별도약정
		이자발생일	
조건 또는 약정			
공동자동차대수 (건설기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서울 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성명(명칭)하나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호 성

사업자등록번호104-86-56659

법인등록번호110111-5505354



구비서류

1.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2.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신청안내

수수료	
신청하는 곳	처리기간 즉시

▶ 근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 등 근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권자에게 근저당권의 말소 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나카드 자동차금융] 근저당권 설정 신청 위임장

위임장

수임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자동차, 건설기계)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구분	선택	내용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이호성
채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I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II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상호)	(서명/인)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이호성

근저당물건의 목록

근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채권최고액	금	원정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저당물건”)에 순위 제 1번 채권 최고금액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채채무 포함)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중물에도 미친다.
③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 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낙을 얻는다.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회사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저당물의 보충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건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 총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③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실행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 관계

①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근저당물건의 목록

근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20 년 월 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채무자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이호성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I	주소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II	주소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채권최고액	금	원정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목 기재한 물건(이하“저당물건”)에 순위 제 1번 채권 최고금액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채채무 포함)
-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중물에도 미친다.
-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 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 소유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낙을 얻는다.
-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경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회사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저당물의 보충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건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 총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실행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행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과의 관계

-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근저당물건의 목록

근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20 년 월 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채무자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이호성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I	주소	성명(상호): (서명/인)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II	주소	성명(상호): (서명/인)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들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은행업), 하나증권(금융투자업), 하나카드(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생명보험(생명보험업), 하나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하나자산신탁(신탁업), 하나에프앤아이(NPL 투자 관리업), 하나금융티아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크(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등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직 의무에 최선을다할 것입니다.
- ⑦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시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하나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증권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카드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자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에프앤아이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금융티아이 고객정보관리인
- 핀크 고객정보관리인

고객 권리 안내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를 안내 드립니다.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 됩니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타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정보의 제3자알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제한: 중단 신청시에는 카드업무 등 관련 금융상품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본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NICE평가정보(주) 1588-2486/(www.credit.co.kr), SCI평가정보(주) 1577-1006 (www.siren24.com)

▶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요구권

하나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 1800-1111 (서울 중구 을지로66)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금융감독원 :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카드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고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 이 약관은 카드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사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트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카드사가 제3자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은 카드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카드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리스크·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용·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을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변경되는 한도내에서 카드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카드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카드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카드사는 자체없이 해소된 상황여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카드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카드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자체할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카드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시장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카드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입의상한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4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자(율)'에 '연체'자(이자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약정'자(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선",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율이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구입액 기준) 중 상초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비용의부담)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보증인 또는 몰상보증인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담보권 등 권리의 행사·보전(이하 포함)에 관한 비용
 -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카드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카드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사사법정율)범위(現 年6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카드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함함), 기한도래정산 상한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의3(위법계약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카드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카드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보증)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카드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반보증적용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카드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정시장에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평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카드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한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카드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카드사 또는 카드사·카드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카드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카드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담보권실현의 방법
 - 피담보채권의 금액
 -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카드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기업에 한함)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무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카드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연대보증인)

- 카드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카드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카드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름이 있는 동안에는 카드사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카드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카드사의 다음으로 변해하기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다른 연대보증인 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동 이유로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요구)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자에게 있어서는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다음으로 변해하기로 합니다.
 -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채권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채권처분 추수가 있을 때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채권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채권처분 추수가 있을 때
 -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수파장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에게 관하여 남기전 장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사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채무자의 과중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 채무자가 생애에 중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당불응을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기개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때부터 계속하여 기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기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기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할부거래에 관한법정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원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치의 10분의 일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번째,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카드사에 대한 자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연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채권처분이 있는 때
 -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합성의 담보권실현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청산절차 개시, 결산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역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보증중 연체배후,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등 등록된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카드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카드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리스료율보다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카드사를 해할 목적으로담보물권을 양도하여 카드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카드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할 때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카드사는 어음교환사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카드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카드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카드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카드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카드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후 카드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카드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카드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 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 철회·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기한전의 임의 사항)

채무자는 약정한 사항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등의 장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할인어음의 한배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한배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한배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카드사는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의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카드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한배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한배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카드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의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카드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카드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 경우,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한배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권인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대리한급 반대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카드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한급반대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카드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카드사가 대리한급반대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카드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한배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한배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타인에게 재당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을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카드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장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에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카드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급반대충당을 할 경우, 카드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정소는 그 거래영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카드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급반대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카드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카드사가 어음의 지급상신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카드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정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카드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한급반대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른 경우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는 지체없이 이익을 포기하고, 카드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가 반대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카드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카드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해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카드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소등중의 사고 등 카드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은탁한 경우 채무자는 카드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카드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카드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카드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카드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기재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도 카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 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카드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 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드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한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카드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통지의 효력)

① 카드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통 지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카드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 또는 융자조건에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카드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 하며, 카드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정·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인항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카드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권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카드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지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금융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카드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 하여 알립니다.

제24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자는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카드사가 분점·지역분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분점·지역분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당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카드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기존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즉시 게시합니다.

1. 법령 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타당한 여신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가소가 불명확치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하나카드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하나카드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하나카드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하나카드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액,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하나카드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를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하나카드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하나카드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선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카드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카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하나카드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초회납입 및 자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하나카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자연배상금율에 의한 자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자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차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회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④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자연배상금율에 의한 자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카드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 하나카드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하나카드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하나카드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담보의 제공)

하나카드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채권의 양도)

하나카드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차이체 약관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차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차이체 처리절차)

자동차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자동계좌이체 대출 가능한 계좌인 경우 그 약정하도 내에서)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방법)

카드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출금우선순위)

이체 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자동차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이의제기)

자동차이체 납부의 신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님의 제공됩니다.

자동차 오토론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의 대출 계약(이하 “오토론 약정”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오토론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하나카드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대출의 실행)

- 오토론 약정에 의한 대출은 하나카드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신청·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하나카드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 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비율
 -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나카드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 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채무자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금리인하 요구권)

- 제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하나카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오토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 하나카드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기타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본 조 제1항 이외에 대출금의 원제시까지 하나카드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8조(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황)

-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 (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오토론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결제방법)

- 하나카드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ex 마이뉴스 통장), 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담보의 제공)

하나카드는 오토론 약정서상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제시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연장)

수사상환식/원금유예식 자동차 오토론에 의한 기한연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되며, 이 경우, 연장금리, 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연장조건은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대외 신용도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지 의무)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카드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오토론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카드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채권의 양도)

하나카드는 오토론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해석)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처리절차)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 (지정계좌가 대출 가능한 계좌인 경우 그 약정한도 내에서)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방법)

카드사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출금우선순위)

이체 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이의제기)

자동이체 납부의 신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제공됩니다.